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8. 11.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 11. 20.
- 다. 상정일자 :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위원회(2018. 12. 1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가. 제안이유

상위 근거법령인 “성별 영향 평가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명칭과 조문 전반

- 기존 조례상의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개정

2)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 정비

- 안 제6조 제1항 제5호 “요청 한” → “요청한”
- 안 제16조 제3호 “부진하여위원” → “부진하여 위원”
- 안 제17조 “수당 과” → “수당과” 등

3. 검토보고 (이주현 전문위원)

- 이진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9.13일 최초 제정·공포 되어 현재 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첫번째로**, 이진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성별 영향 평가법’이 2018.9.28일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이진 기존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기존 조례상의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를 “성별영향평가” 용어로 개정
- 기존 조례상 적용부분 : 조례의 “명칭”과 “조문” 전반

- **두번째로**, 이진 기존 조례의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제6조 제1항 제5호 “요청 한” ➡ “요청한”
- 제16조 제3호 “부진하여위원” ➡ “부진하여 위원”
- 제17조 “수당 과” ➡ “수당과” 등

- **검토 종합결과**, 상위 법령인 “성별 영향 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이진 기존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또한 조문상 용어나 띄어쓰기를 맞춤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진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의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